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추진현황 및 계획

서 기 석*

1. 서 론

'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여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늦춘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는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특이익을 보호하여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기도 하며, 기준과 적용이 애매 모호한 규제의 경우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성실한 사회 기풍 조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감소시켜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창의성과 자율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이에 발맞추어 세계화, 자유화, 정보화 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민주시민의 실현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0% 이상 기존규제 철폐」 등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업자원부가 그 동안 추진하여온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규제개혁 추진성과

가.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정부의 기존규제 50% 이상 폐지방침에 따라 군납에 관한 법률 등 34개 규제개혁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등 51개 하위법령을 모두 정비 완료하여 '99년말 현재 총 규제 667건 중 51.3%인 342건 폐지 완료하였다.

각 분야별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서는 중고품 수입제한 폐지('99. 1),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99. 7)를 실시하여 그 동안 보호받아 왔던 국내 관련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가격·품질경쟁력강화 및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하였다.

산업분야에서는 합리화업종 지정제도를 폐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 사무관

지('99. 5)함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업종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장입지기준 고시를 개정('99. 12)하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종전의 평균 20%에서 12%로 인하하여 기업이 향후 투자 등을 위한 토지보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광업권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 폐지('99. 7),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98. 10)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표 1〉 규제정비현황 (단위: 건)

총규제수	'98 정비계획			추진현황('99. 12월말 기준)		
	계	폐지	개선	계	폐지	개선
667 (100%)	519	343	176	514 (77.1%)	342 (51.3%)	172 (25.8%)

나. 잔존규제의 정비계획 수립

기존규제중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잔존규제에 대해서도 16건은 폐지, 25건은 개선토록 '99. 10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잔존규제정비 검토작업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 LG경제연구원, KIET,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민간·공공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부문이 규제개혁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다.

주요정비내용으로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이양(2000년말)토록 하고, 사전안전검사의 검사수수료를 실제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징수방법을 개선하며,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휴지기간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운영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개별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들을 중점 발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61조의 의거 '93. 8월 발족되었다.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이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현장의 애로실태조사 및 과제접수 등을 담당하는 기업애로신고 센터를 6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설치운영중이다.

지금까지 19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65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토록 의결하였으며, 해당부처가 개선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여 개선완료된 사항이 '99년말 현재 82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 기업애로과제 개선권고 및 추진현황 (단위: 건)

연도	93	94	95	96	97	98	99	계	
개선권고	32	149	211	137	202	81	53	865	
이행 상황	완료	32	147	211	137	196	70	36	829
	추진중	-	2	-	-	6	17	17	36

라.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설치 운영

“규제개혁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지시의 조기실현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99년 11월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다.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업정책규제개혁작업팀 등 총 18개 작업반으로 구성 운영중이며, 각 작업팀에서 규제를 발굴하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개선 권고토록 하

고 있다.

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어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규제완화가 어렵거나, 애로해소가 시급한 분야의 조속한 규제완화를 달성코자 '93. 6월에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4차 개정(2000. 1. 28 공포)을 통해 가스관련시설에 대한 중복규제완화, 영업관리 품질검사제도개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확인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바. 신설·강화규제 억제

신설·강화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2인을 추가 선임하여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높임으로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4명)

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인터넷 Site 구축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한 기업애로신고과제의 접수 및 각종 기업규제개선자료의 D/B화 등을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보강·개편(2000. 2월)하였습니다. 동사이트에는 지금까지의 위원회 개최실적, '98~'99년 개선권고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어 위원회의 활동실적과 기업애로과제 처리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주소 <http://www.mocie.go.kr/deregulation>)

3. 규제개혁 성과 평가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정부의 기존규제 50% 폐지방침에 따라 규제개혁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정비하여 51.3%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을 선도하였다.

다만, 산업자원부의 규제는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지원·육성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으며, 규제개혁 업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례 등 하위규정의 정비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 효과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4. 200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목 표〉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가. 『기업규제개혁작업단』 활성화로 시장의 자율성 확대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활성화하여 규제의 발굴 개선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는 시장의 조성·관리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장실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규제심의위 사무국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와 합동조사를 통한 산업현장과 밀착된 기업애로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세미나개최, 인터넷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접수, 설문조사실시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의 발굴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나. 중점과제 중심의 정비추진으로 규제 개혁효과 확산

총량적 규제감축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의 단순 규제정비에서 21세기에 도래할 신지식·신기술 사회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걸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피규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중점과제 중심의 정비추진으로 규제 개혁 효과의 확산 및 내실화를 기하여 나갈 것이다.

〈표 3〉 중점과제 추진계획

과 제 명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일정
1.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 협회, 법인 등과 관련된 규제개선 방안	2000. 7
2. 수도권산업입지 관련 규제개선	2000. 6
3. 형식승인, 품질인증 관련 규제개선	2000. 6
4. 에너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2000. 9
5. 전력기술관리 관련 규제개선 방안	2000. 10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직접규제 이외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행정규제로 느끼고 있는 각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협회, 법인단체 등 준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의 일체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법령상 근거없는 수수료 징수, 일정한 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 규제의 품질제고 및 영향분석의 철저로 신설규제 억제

규제의 대안개발을 통하여 규제중심의 행정문화를 개선함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특정규제에 대한 준수율 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신설·강화 심사시 신설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비용효과 분석 포함)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토록 추진할 것이다.

라. 사후관리 철저 및 효과적인 홍보로 대국민 체감도 제고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규제가 현장에서 집행되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관리토록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업무의 경우 법령개정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토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Site』를 통해 각종 규제개혁 관련 홍보자료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개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5. 결 론

규제개혁은 OECD를 비롯한 세계각국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고 국민과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숙된 시민의식과 서비스정신의 바탕에서 서로 협조를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